

建設工事調査計劃

建設工事調査特別委員會

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4.

발의자 : 양동복 의원 외 4인

주 문

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- 활동기간 : '96. 5. 2 ~ 6. 30 (60일간)
- 구성인원 : 13명

제안이유

-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건설 관련공사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된 각종사업의 계약관계, 시공실태, 준공후 사후 관리문제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
- 특히 가뭄대책과 식수원으로 사용키 위해 굴착했던 중.대형 관정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잘못 발주 및 시공된 사례들을 발췌하여 시정토록 하여
- 건설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확보와 향후 건설한 건설공사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.

건설공사조사세부계획 (안)

1. 목 적

-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건설 관련공사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된 각종사업의 계약관계, 시공실태, 준공후 사후관리문제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
- 특히 가뭄대책과 식수원으로 사용키 위해 굴착했던 중.대형관정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잘못 발주 및 시공된 사례들을 발췌하여 시정토록 하여
- 건설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확보와 향후 건설한 건설공사로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.

2. 조사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호
-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3. 조사기간 및 장소

- 1996. 5. 2 ~ 6. 30 (60일간)
- 특위에서 정하는 장소 (사무실 및 현장)

4. 조사대상

- 대상관련기관 : 군본청 및 사업소, 읍.면, 민간자본보조단체 및 개인
- 대상공사범위 : 1995. 1. 1 ~ 1996. 4. 30일 이전에 및 준공처리된 각종건설 관련공사
(추후 구체적 대상공사는 특위결정으로 확정함)

5. 특위구성인원

- 의회 의장을 제외한 13명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과 간사를 반장으로 하여 2개반 편성

6. 조사요령

- 조사대상 사업조서 징구
- 서류조사 및 시공현장 확인
-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민간자본보조단체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청취 (질의 응답 포함)
- 위법부당사례 확인서 징구
- 기타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의회사무과 협조 의뢰
- 조사진행은 공개원칙이나 특위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.

7. 조사결과처리

-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는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처리토록 이송

8. 소요경비

-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및 필수 소요경비 지급